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70

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이재강・김문수・최민희

정일영 • 박해철 • 한정애

박홍근 • 허성무 • 채현일

김기표 • 이기헌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현행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를 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. 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어 우편투표를 활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공직선거에서 도입 여부가 지속 논의되어 온 전자 투·개표는 그간 보안상의 문제로 도입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, 최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-voting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존 전자 투·개표 시스템의 보안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 투·개표 시스템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따라서 본 개정안의 목적은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 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 우편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투 표 편의를 높이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향후 재외선거에서 전자 투·개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 자등록기간을 앞당김(안 제49조제1항).
- 나.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함(안 제218조의4 제2항제6호 및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신설, 제218조의8제2항 및 제218조의9제2항 신설).
- 다.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,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 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(안 제21 8조의18제5항 및 제6항 신설).
- 라.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)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(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).
- 마. 그 밖에 국내의 거소투표에 준하여 재외거소투표에 관한 사항을 보완·정비함(안 제218조의21제1항, 제218조의25제4항 신설 등).

바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 치를 이용한 전자투·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방법 및 절차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18조의35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국회의원선거의 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부터 선거일까지
- 3.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일부터 선거일까지

제49조제1항 중 "대통령선거"를 "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"로, "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를 "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를 "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로 한다.

제64조제2항 전단 중 "대통령선거"를 "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"로, "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를 "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"로 한다.

제218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

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

제218조의4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재외거소투표 여부(제218조의17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제218조의19제4항에 따라 거소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하려는 경우를 말하며,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6호에서 같다) 제218조의5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6. 재외거소투표 여부
- 제218조의8제1항 전단 중 "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"을 "선거일 전 45일까지 5일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재외선거인명부"를 "재외선거인명부 (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 -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5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거소투표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218조의9제1항 전단 중 "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"을 "선거일 전 45일까지 5일간"으로,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"를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"를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구·시·군의 장은 제218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거소투표 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.

제218조의12제2호 중 "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"를 "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"로 한다.

제218조의13제1항 중 "30일"을 "35일"로 한다.

제218조의1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재외투표"를 "재외투표(재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다만, 재외거소투표자(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국외부 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"○"표를 할 수 있다.

제218조의18제4항 후단 중 "제218조의16제1항"을 "제218조의16제1항 본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부 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표용지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.
- ⑥ 재외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(재외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재외거소투표자의 거소, 성명,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)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우편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⑦ 재외투표관리관은 투표방법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안내문과 본인

확인서약서를 재외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.

- ⑧ 재외거소투표자에 관하여는 제15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- 이 경우 "거소투표자"는 "재외거소투표자"로, "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"는 "재외선거관리위원회"로, "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"는 "책임위원등"으로 본다.

제218조의19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)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외선거인은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및 본인확인서약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.
-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송부된 재외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거소투표함에 투입·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표마감 후 접수된 재외거소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·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제218조의21제1항 본문 중 "투표함"을 "투표함(제218조의19제5항 본문에 따른 재외거소투표함을 포함한다. 이하 제218조의22제2항에서 같

다)"으로, "투표자수"를 "투표자수(제218조의19제5항 본문에 따른 재외거소투표자수를 포함한다. 이하 제218조의22제1항에서 같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재외투표"를 "재외투표 및 제218조의19제5항에 따른 재외거소투표"로 한다.

제218조의22제3항 중 "그 밖에"를 "재외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재외거소투표의 접수, 그 밖에"로 한다.

제218조의23제1항 중 "재외투표"를 "재외투표(재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제218조의25제1항 전단 중 "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·제10호"를 "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10호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재외거소투표자가 제218조의19제4항 후단에 따라 재외투표관리 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및 본인확인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재외거소투표를 무효로 한다.

제218조의35를 제218조의36으로 하고, 제218조의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8조의35(전자투·개표 실시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투표 및 개표(이하 이 조에서 "전자투·개표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에서 전자투·개표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

야 한다.

③ 전자투·개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242조제1항제2호 중 "거소투표자"를 각각 "거소투표자·재외거소투표자"로, "거소투표"를 "거소투표·재외거소투표"로 한다.

제256조제3항제2호가목 중 "제218조의9제3항"을 "제218조의9제4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선거기간) ① • ② (생	제33조(선거기간) ① · 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"선거기간"이란 다음 각 호	3
의 기간을 말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	2. 국회의원선거의 선거: 후보
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:	자등록마감일 후 10일부터 선
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	<u>거일까지</u>
선거일까지	
<u><신 설></u>	3.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
	장의 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
	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
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 후보자	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
의 등록은 <u>대통령선거</u> 에서는	대통령선거 및 국회
선거일 전 24일, <u>국회의원선거</u>	의원선거
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	<u>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</u>
<u>및 장의 선거</u> 에서는 선거일 전	<u>및 장의 선거</u>
20일(이하 "후보자등록신청개	
시일"이라 한다)부터 2일간(이	
하 "후보자등록기간"이라 한다)	
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	
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	
	– .
② ~ ⑮ (생 략)	② ~ ⑮ (현행과 같음)

제64조(선거벽보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 보자를 제외하며,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작성하 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 감일 후 3일(제51조에 따른 추 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 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)까 지,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. 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고, 해당 구·시·군선거관리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 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(대통령 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)까지 첩부한다. 이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 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(투표

제64조(선거벽보) ① (현행과 김	<u> </u>
<u>♥</u>)	
②	_
	_
	_
대통령선거 및]
국회의원선거	
<u> </u>	
	_
	_
	_
	_
	-
	_
<u>지방자치단체의</u>]
<u>지방자치단체의</u>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	_
	_
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	_

구를 단위로 한다)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,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· 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 역을 지정한다.

③ ~ ① (생 략)

-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 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처리한다.
 - 1. 2. (생략)

<신 설>

- 3. ~ 6. (생략)
-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1. (생략)

<신 설>

- 2. ~ 5. (생략)
-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7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

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③ ~ ⑫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
③ ~ ②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③ ~ ⑫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
③ ~ ②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③ ~ ⑫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
③ ~ ②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③ ~ ⑫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
③ ~ ②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③ ~ ⑫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
③ ~ ②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③ ~ ⑫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
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 	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 	
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 	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 	
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	③ ~ ⑫ (현행과 같음)
		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
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
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
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
2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2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
3. ~ 6. (현행과 같음) ②	3. ~ 6. (현행과 같음) ②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	②	2의2. 재외거소투표관리
		3. ~ 6. (현행과 같음)
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②
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
및 발송2. ~ 5. (현행과 같음)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(현행과 같음)	및 발송2. ~ 5. (현행과 같음)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(현행과 같음)	1. (현행과 같음)
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2. ~ 5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1의2.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
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	및 발송
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2. ~ 5. (현행과 같음)
, = 0 , = = /		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
②	②	(현행과 같음)
		②

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 설>

③ ~ ⑤ (생 략)

제218조의5(재외선거인 등록신청) 저

- ① (생략)
- ② 재외선거인 등록신청(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을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- 1. ~ 5. (생략)

<u><신</u> 설>

③ ~ ⑤ (생 략)

제218조의8(재외선거인명부의 작 정성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
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재외거소투표 여부(제218조
의17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
투표하지 아니하고 제218조의
19제4항에 따라 거소에서 재
외거소투표를 하려는 경우를
말하며, 이하 제218조의5제2
 항제6호에서 같다)
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세218조의5(재외선거인 등록신청)
① (현행과 같음)
2
_
· 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재외거소투표 여부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세218조의8(재외선거인명부의 작
성) ①
0/ 1

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 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 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 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.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 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 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 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 부를 작성한다.

<신 설>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 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 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

<u>선거일 전 45일까지 5</u>
<u>일간</u>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
8조의5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
거소투표가 있는 때에는 제1항
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이
를 표시하고 재외거소투표선거
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
<u>다.</u>
<u>③</u>

된 <u>재외선거인명부</u>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.

③ ~ ⑥ (생 략)

제218조의9(국외부재자신고인명 부의 작성) ① 구·시·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 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(이하 이 장에 서 "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 성기간"이라 한다)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해당 구・시・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 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 인명부를 작성한다. 이 경우 같 은 사람이 2 이상의 국외부재 자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 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

재외선거인명부(재외거소투
표선거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
<u>같다)</u>
<u>④</u> ~ <u>⑦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6
ㅡ ㅡ 항까지와 같음)
제218조의9(국외부재자신고인명
부의 작성) ①
선거일 전 45
일까지 5일간
<u>ਦਿਆ ਹੁਦੇ ਦੇ</u>
<u>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</u>
(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
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한다.

<신 설>
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략)

제218조의12(대통령의 궐위선거 저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 축) 제218조의4부터 제218조의 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.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.

- 1. (생략)
- 2.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 간

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218조
의4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거
소투표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
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
그 사실을 표시하고 거소투표
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
작성하여야 한다.
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
항과 같음)
세218조의12(대통령의 궐위선거
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
考)
·
1. (현행과 같음)
2

<u>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</u> 전 30일까지

제218조의13(재외선거인명부등의 저확정과 송부) ① 재외선거인명부등의 부등은 선거일 전 <u>30일</u>에 확정되며,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218조의16(재외선거의 투표방 전법)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제1 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

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 시(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 한다)까지 관할 구 · 시 · 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 야 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
전 35일까지
세218조의13(재외선거인명부등의
확정과 송부) ①
<u>35일</u>
<u>.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세218조의16(재외선거의 투표방
법) ①
<u>다만, 재외거</u>
소투표자(재외거소투표선거인
명부 또는 거소투표국외부재자
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
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거소
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"○"표
를 할 수 있다.
② 재외투표(재외거소투표를
<u> 포함한다)</u>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218조의18(투표용지 작성 등) 7 ① ~ ③ (생 략)

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작성 ·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 · 교부한다. 이 경우 제218조의16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투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. <신 설>

<u><신 설></u>

제218조의18(투표용지 작성 등)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<u>제218</u> 조의16제1항 본문-
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
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
표용지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투
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
<u>성한다.</u>
⑥ 재외투표관리관은 제5항에
따라 작성된 투표용지의 일련
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(재외
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재
외거소투표자의 거소, 성명, 재

외선거인명부등 등재번호 등이

<신 <u>설></u>

<신 설>

⑤ (생략) 제218조의19(재외선거의 투표 절 제218조의19(재외선거의 투표 절 차) ① ~ ③ (생 략)

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 호를 말한다)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 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 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우편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다.

- ⑦ 재외투표관리관은 투표방법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안내문과 본인확인서약서를 재외거소투 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.
- ⑧ 재외거소투표자에 관하여는 제15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한다. 이 경우 "거소투표자"는 "재외거소투표자"로, "구·시· 군선거관리위원회"는 "재외선 거관리위원회"로, "읍·면·동 선거관리위원회"는 "책임위원 등"으로 본다.
- ⑨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④ 재외거소투표자는 재외투표 관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투표 용지에 1명의 후보자(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 당을 말한다)를 선택하여 투표 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 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 하여 발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외선거인은 제218조의5제4항 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 고한 서류의 사본 및 본인확인 서약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 다.

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 으로 송부된 재외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거소투표함 에 투입·보관하여야 한다. 다 만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 표마감 후 접수된 재외거소투 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・봉 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 계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제218조의21(재외투표의 회송) ① 저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<u>투표함을</u> 열고 <u>투표자수</u>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·봉인(封印)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공관과의 거리 등의 사유로 매일의 재외투표를 인계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종료후 그 기간 중의 재외투표를일괄하여인계할수있다.

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<u>재외투표</u>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

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∥218조의21(재외투표의 회송) ①
<u>투</u> 표함(제21
8조의19제5항 본문에 따른 재
외거소투표함을 포함한다. 이하
제218조의22제2항에서 같다)
투표자수(제218조의19제
5항 본문에 따른 재외거소투표
자수를 포함한다. 이하 제218조
의22제1항에서 같다)
,
②
<u>재외투표 및 제218조의19</u>
제5항에 따른 재외거소투표

회송하고, 외교부장관은 외교행 낭의 봉함·봉인 상태를 확인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재외투표 의 수가 많은 때에는 재외투표 기간 중 그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.

③ · ④ (생 략)

- 제218조의22(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·송부) ① · ② (생 략)
 -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 관리록을 비치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, 재외투표소 설치 ·운영, 그 밖에 재외선거 및 국외부재자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18조의23(재외투표의 접수) ① 7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<u>재외투표</u>의 투입과 보관을 위하여 국외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제218조의22(재외투표소투표록
등의 작성・송부) ① ・ ②
(현행과 같음)
③
재외거소투표용지의
발송 및 재외거소투표의 접수,
그 밖에
<u>.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218조의23(재외투표의 접수) ①
재외투표(재
외거소투표를 포함한다. 이하

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(이하 이 조와 제218조 의24에서 "재외투표함"이라 한 다)을 각각 갖추어 놓아야 한 다.

② (생략)

제218조의25(재외투표의 효력) ①
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
제179조(같은 조 제3항 및 제4
항제7호·제10호는 제외한다)
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전투표 및 거소투표"는 "재외투표"
로, "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"는
"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"는
"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"로, "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"
는 "재외선거인등이"로, "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"는 "재외투표"
투표 또는 선상투표"는 "재외투표"

② · ③ (생 략) <신 설>

같다)
 (최 기 기 기 이)
② (현행과 같음) 제210 Z 이 25(제이토고이 출러) ①
제218조의25(재외투표의 효력) ①
같은 조 제3항 및 제4
<u> </u>
<u>8 / 110 </u>
•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④ 재외거소투표자가 제218조
의19제4항 후단에 따라 재외투
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
본 및 본인확인서약서를 제출
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외

<신 설>

제218조의35(시행규칙) (생략)

- 제242조(투표·개표의 간섭 및 제242조(투표·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 - 1. (생 략)
 - 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 한 사람, 거소투표자의 투표

거소투표를 무효로 한다. 제218조의35(전자투·개표 실시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선거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를 이용한 투표 및 개표(이하 이 조에서 "전자투·개표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 선거에서 전자투 · 개표를 하려 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재외선 거관리위원회 설치 전까지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. ③ 전자투·개표의 방법 및 절 차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. 제218조의36(시행규칙) (현행 제2 18조의35와 같음) 방해죄) ① -----1. (현행과 같음) 2. 정당한 사유 없이 <u>거소투표</u> 2. -----<u>거소투표</u> 자・재외거소투표자-----

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<u>거소투표</u>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한 사람

- ② · ③ (생 략)
- 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 7
 - · ② (생 략)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.
 - 1. (생략)
 - 2. 選擧秩序와 관련하여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
 - 가. 제39조제8항(<u>제218조의9</u> <u>제3항</u>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)의 規定에 위 반하여 選擧人名簿作成事 務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者
 - 나. ~ 아. (생 략)
 - 3. 4. (생략)
 - ④·⑤(생략)

<u>소두표자·재외거소두표자</u>
<u>거소투표·재외거소투표</u> -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256조(각종제한규정위반죄) ①
· ② (현행과 같음)
③
 1. (현행과 같음)
1. (包罗开 崔吉) 2
۵.
가제218조의9
제4항

나. ~ 아. (현행과 같음)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